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74
----------	-----

2022. 1. 20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8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월 20일

-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옥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 정비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 →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(안 제12조제2항제1호)
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(안 제15조)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- 단 → 다만, 보궐위원 → 새로 위촉된 위원, 아니한 → 않은, 아니하다고 → 않다고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조례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”를 “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”로 한다.

제13조제4호 중 “연구·개발·도입·지도”를 “연구·개발, 도입, 지도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7조제4항 단서 중 “보궐위원”을 “새로 위촉된 위원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아니하다고”를 “않다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본원칙)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 단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지역여건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제3조(기본원칙)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 <u>다만</u>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지역여건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정부 외의 자(「<u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)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2조(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정부 외의 자(「<u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)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기금의 용도 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13조(기금의 용도 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4. <u>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·개발·도입·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</u></p> <p>5.·6. (생략)</p> <p>제15조(기금의 <u>운용관리</u>) 도지사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「<u>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제1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<u>설치 및 구성</u>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, <u>보궐위원</u>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·⑥ (생략)</p> <p>제20조(위원의 <u>위촉 해제</u>)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/p>	<p>4. <u>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·개발, 도입, 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</u>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기금의 <u>운용관리</u>) 도지사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「<u>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제1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<u>설치 및 구성</u>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, <u>새로 위촉된 위원</u>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위원의 <u>위촉 해제</u>)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<u>아니한</u> 경우</p> <p>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<u>아니하다고</u> 인정되는 경우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<u>않은</u> 경우</p> <p>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<u>않다고</u> 인정되는 경우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녹색건축물"이란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제9조(실태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·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
2.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

3.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

4.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,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,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(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(이하 "그린리모델링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 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·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

제17조(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)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·증축·개축·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. 다만, 수선은 창·문, 설비·기기,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,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